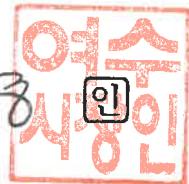
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차장  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

2023.12.29



여수시 조례 제2035호

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35호

##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(본인 명의의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트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주차요금 등) ④ 제11호(신설) <신 설>	제6조(주차요금 등) ④ 제11호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「<u>여수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(본인 명의의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트</p>